

공 고

●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- 065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2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(예정) 대상 : 권*현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 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,400만원(20% 감경)

5. 의견제출장소 :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☎ 042-347-2101 / FAX 042-347-2108 / E-mail: eagle1005@korea.kr)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권*현	781215-1*****	충북 청주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30,000,000	1688-**-55	대리운전